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● 세액공제･면제･감면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･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× 세율(20%) ● 비과세･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{( 과세표준금액 ＋ 비과세･소득공제 금액 × 법인세율 ) － ( 과세표준 금 액 × 법인 세율 )} × 세율 (20%) ● 조합법인 {(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× 일 반 법인세율 ) － (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× 9％ )} × 세율 (20%)